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승혜 (재)푸른나무청예단 상담·사업본부장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제3차(2015년~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2017년 12월) (관계부처합동, 2015, 2017)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전국단위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이 필요한 실정임(교육부, 201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전국단위의 안정적 지원 운영체계 구축안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함.

- ▶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약칭: 학교폭력 예방법)을 제정하고,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2015년~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2017년 12월) 등을 수립하여 대치를 해오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15, 2017;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2018.05.15a, 2018.05.15b).
- ▶ 이에 따르면,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5.15a, 2018.05.15b).

- ▶ 또한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분쟁조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5.15a, 2018.05.15b).
- ▶ 그런데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이후, 관련 학생의 원활한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분쟁조정 실시보다, 관련 학생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집중하는 양태를 나타내어,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원활한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분쟁조정 관련 전국 단위의 안정적 운영체계, 전문인력 양성 등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음.
- ▶ 그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음(교육부, 2014; 문영희, 2004; 박주형, 정제영, 이주연, 2013; 배원섭, 성희자, 2014; 염영미, 2011; 이경상, 장원경, 2015; 한영선, 2012). 그러나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 분쟁당사자에 의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분쟁조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푸른나무 청예단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매뉴얼 및 사업보고서들(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2016, 2017a, 2017b, 2018a)외에, 수행된 관련 연구들이 그리 충분치 않은 상태임(도종진, 2012; 류병관, 2013; 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이상희, 2014). 특히, 전국단위의 안정적 지원 운영체계 구축안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왔음.
- ▶ 현재 제3차(2015년~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2017년 12월)(관계부처합동, 2015, 2017)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전국단위의 안정적 지원 운영체계 구축안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이 필요한 실정임(교육부, 2018).
-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제안을 받아, 첫째, 기 발간된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관련 문헌자료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화해 · 분쟁조정의 개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이 연구에서 직접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안정적 지원 운영체계 구축안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내용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 개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고찰,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 분석, 효율적 화해·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제시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수행하였음.

■ 연구내용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 개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먼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그간 화해·분쟁조정 사업을 진행해왔던 (재)푸른나무 청예단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간되었던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매뉴얼 및 사업보고서들, 분쟁조정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들, 관련 법률자료와 같은 문헌자료를 리뷰하여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의 목적은 무엇인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의 필요성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 분석

-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직접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여 잘 알고 있는 전국의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업무 담당 장학사, 학교폭력 관련 시도 교육청 변호사, 일반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단체의 현장전문가 총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 이어,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 보았음.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 개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그간 화해·분쟁조정 사업을 진행해왔던 (재)푸른나무 청예단의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매뉴얼 및 사업보고서들, 분쟁조정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들, 관련 법률자료 수집 및 분석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해 (재)푸른나무 청예단의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매뉴얼 및 사업보고서들, 분쟁조정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들, 관련 법률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구성을 위해 교육청 학교폭력업무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실시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 학교폭력관련 시도 교육청 변호사, 일반 변호사,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실시
-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에 대한 학계 전문가 자문 실시

▶ 전문가 의견조사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과 관련된 전문가들 중 교육분야 전국의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업무 담당 장학사 16명, 법률분야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반 변호사 5명, 민간분야 학교폭력관련 비영리단체 전문가 6명의 총 27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의견조사는 개방형을 위주로 일부 선택형이 함께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현장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는 일부 대상자에게는 면담도 함께 진행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 연구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부 담당자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Ⅲ.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개념,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정책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이라는 법률적 용어대신 화해 · 분쟁조정이라는 정책적 용어를 사용하였음.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의 목적은 교육 3주체간의 갈등심화 예방, 당사자들 간의 신뢰, 관계 회복 지원, 당사자들 간의 손상회복과 피해복구, 당사자들 간의 재발방지, 안전확보 등임.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의 필요성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복합적인 갈등상황들과 분쟁들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해지는 데 있음.

▶ 여기에서는 학교폭력 피 · 가해학생 간 화해 · 분쟁조정관련 법률자료, 매뉴얼, 사업보고서, 논문 등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의 개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음.

▶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의 개념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는,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으로 규정하고 있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5.15.a).
- 그러나 그간 교육부의 위탁으로 화해 · 분쟁조정 사업을 진행해왔던 기관인 (재)푸른나무 청예단에서는 화해 · 분쟁조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의 법률에서 규정한 분쟁조정의 의미가 사업진행시에는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 많아서, 아래와 같이 화해조정과 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여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5.15.a;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6).
- 화해조정 :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대상자 간 갈등 발생시 이해, 공감, 소통, 치유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계회복 조정(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6).
- 분쟁조정 :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갈등 발생 시 법적 소송 및 분쟁의 최소화를 위한 합의 조정(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6).
- 현재 법률적인 사항을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로는 분쟁조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책사업을 지칭하는 정책적 용어로는 화해 · 분쟁조정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도중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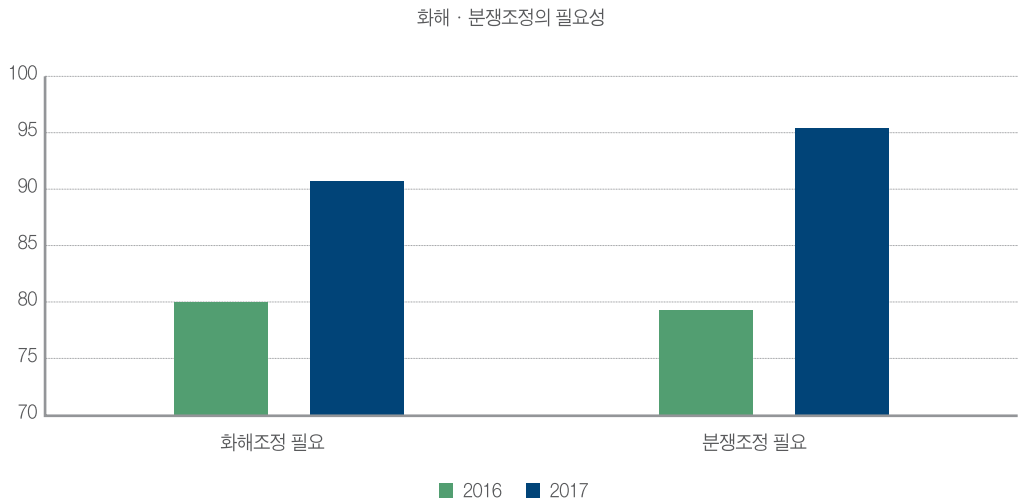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5.15.a;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6). 이 연구에서는 정책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화해·분쟁조정이라는 정책적 용어를 사용하였음.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의 목적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의 목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학교폭력 발생 후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학교의 교육 3주체간의 갈등심화를 예방함(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당사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신뢰, 관계의 회복을 도움(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당사자들 간의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손해배상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손상회복과 피해복구를 도움(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당사자들 간의 추가적인 피·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의 필요성

- 학교폭력으로 인한 복합적인 갈등상황들과 분쟁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해 짐(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7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화해 및 관계회복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0.8%로, 2016년 응답인 80.0%에 비해 10.8% 증가하였음((재)푸른나무 청예단, 2017c, 2018b).
- 또한 ‘학교폭력으로 법적 소송 및 치료비 요구 등이 생길 경우 분쟁 해결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5.1%로, 2016년 응답인 79.6%에 비해 15.5% 증가하였음((재)푸른나무 청예단, 2017c, 2018b).



[그림 1] 화해 · 분쟁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자료출처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7c, 2018b의 내용을 재구성

- 학교폭력의 특성상 피해·가해학생 외에도 학부모, 학교 등 여러 주체가 한 사안에 연루되어 있음. 따라서 각 주체에 대한 개별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간에 생기는 갈등과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욕구차이를 이해하고 서로간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여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처리과정이 아닌 장기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함(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단계와 외부 제3의 기관이 연계되어 객관적 입장으로 진행하는 단계 등 각 사안에 따라서 이를 조정하는 효율적인 조정 역할자가 필요함(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 전문성을 갖춘 개입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에게 신뢰성, 공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균형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IV.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학교폭력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우선 전국단위의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중앙지원단-17개 시도교육청-지역 화해 · 분쟁조정지원단 위탁 운영 체계(1안),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중앙지원단-지역 화해 · 분쟁조정지원단 직영 운영체계(2안), 先 중앙지원단 직영(2안) 시범운영, 後 지역 위탁(1안) 운영 체계 전환의 세 가지 모형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음.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확보, 법률개정, 외부전문기관 위탁 및 협업시스템 구축, 학교폭력단계별 화해 · 분쟁조정 적용확대, 학교·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 연수 지원, 사후관리를 통한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음.

- ▶ 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직접 전국의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업무 담당 장학사 16명, 학교폭력 관련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및 일반 변호사 5명, 학교폭력관련 단체 현장전문가 6명의 총 27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일반적 개선사항 관련

- ▶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대상자 간(학생, 보호자 등) 갈등해결, 관계회복,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필요성 여부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절차가 필요한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주요 의견으로는 사안초기에 외부기관에 의한 조정을 통해 학교가 분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 외에 사법적 개입이 아닌 교육적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학생 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갈등과 분쟁이 지속된다면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공감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현행 법률이 교육적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관점에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어서 대안으로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관계회복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대상자 간(학생, 보호자 등) 갈등해결, 관계회복, 분쟁조정 제도의 한계와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제도의 한계와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주요 의견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음. 화해 · 분쟁조정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용어) 재정립과 개입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화해 · 분쟁조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사례 공유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 외에 학생들에 대한 상담, 치유, 의료, 법률 자문 등 학교의 해결 권한을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화해조정과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이 확대하여야 한다.”

“조정 관련 기관의 모델 구축 및 시스템화를 통한 통합적 관리되어야 한다.”

“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화해한 경우 전담기구 사안 종결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갈등해결, 관계회복, 분쟁조정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요인 및 사례

-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주요 의견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음. 법률 및 사안처리에 대한 이해와 조정가의 전문성과 노하우, 예산지원 및 안정화,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조정 결과가 조치 경감에 반영되도록 법률적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방적 조치로서 평소 토론하는 문화, 대상 학생들이 공감적으로 대화하려는 의지와 학교의 적극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사안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조정기관의 신뢰도, 교육부의 예산지원, 학교 측의 적극성, 수요자의 의지가 함께 되어야 한다.”

“사안처리 절차와는 별개로 학교장의 갈등해결,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수반될 때 더욱 효과적이었다.”

“갈등해결이나 관계회복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그에 따른 법률 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량,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효과적 해결 및 조정을 위해 필요한 도움

- 학교폭력 효과적 화해 ·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도움으로 전문가 현장 직접지원, 지역 내 화해 ·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 화해 · 분쟁조정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화해 · 분쟁조정 전문가 연수 지원, 사례 관리 시스템 마련 순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 의견(모델, 법률 개정 등)

-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운영 활성화 방안 질문에 전국 단위의 지원 팀과 각 시도별 전문 인력 양성, 정기적 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성 관리 및 강화, 각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운영 체계, 모델 개발 시 외국과 사회구조나 인식 차이를 감안한 한국형 모델 개발 필요성, 화해 · 분쟁조정 범위 및 역할 재정립, 교원 대상 연수 과정의 개설로 교육적 공감대 형성, 외부 전문기관과 유기적 연계, 단계별 공정한 개입을 위한 매뉴얼 제작 보급,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등이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관리자(학교장, 교감) 대상, 책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을 상대로 연수 과정 개설이 되어 화해 · 분쟁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면 좋겠다.”

“화해 · 분쟁조정 역량이 있는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국 단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시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과 외국 사회구조 및 국민 인식 차이성을 고려한 한국형 접근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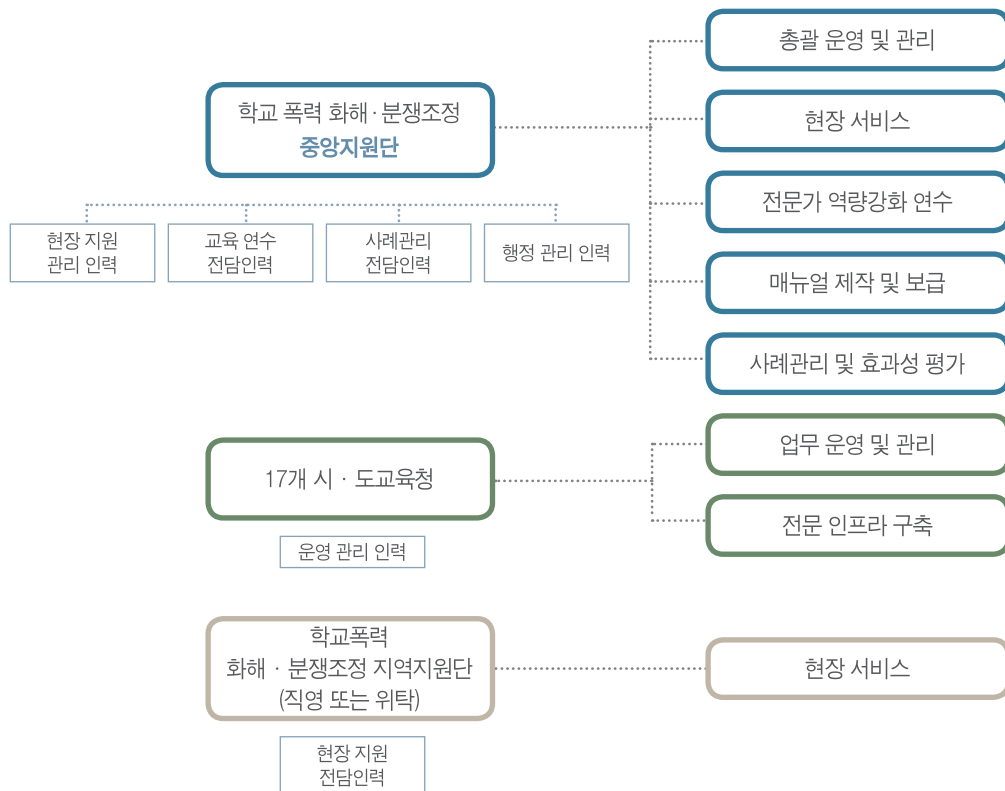
▶ 전국단위의 지원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단위로 안정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화해 · 분쟁조정 지원 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의견을 수렴하였음.

1) 1안 :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중앙지원단-17개 시도교육청-지역 화해 · 분쟁조정지원단 위탁 운영 체계

- 주요 의견으로는 시·도교육청 역할 강화, 정책 방향과 일치성 확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운영,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 운영,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시·도교육청에서 업무 운영 및 관리 시 학교가 분쟁의 주체가 될 경우 조정 역할 한계, 전문성 결여, 지역별 인프라 구축 한계, 업무과중 및 부담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음.
- 또한 1안 모델 운영시 중앙지원단에는 전국 현장 지원 관리, 교육 연수 지원, 사례 관리 및 효과성 연구 등 전문성 관리, 행정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은 조정전문가, 법률전문가, 상담전문가 등 지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최소 2인 1조의 현장 지원 인력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역지원단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음.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중앙지원단과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 화해·분쟁조정 지역지원단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각 역할별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림 2] 1안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중앙지원단-17개 시도교육청-지역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위탁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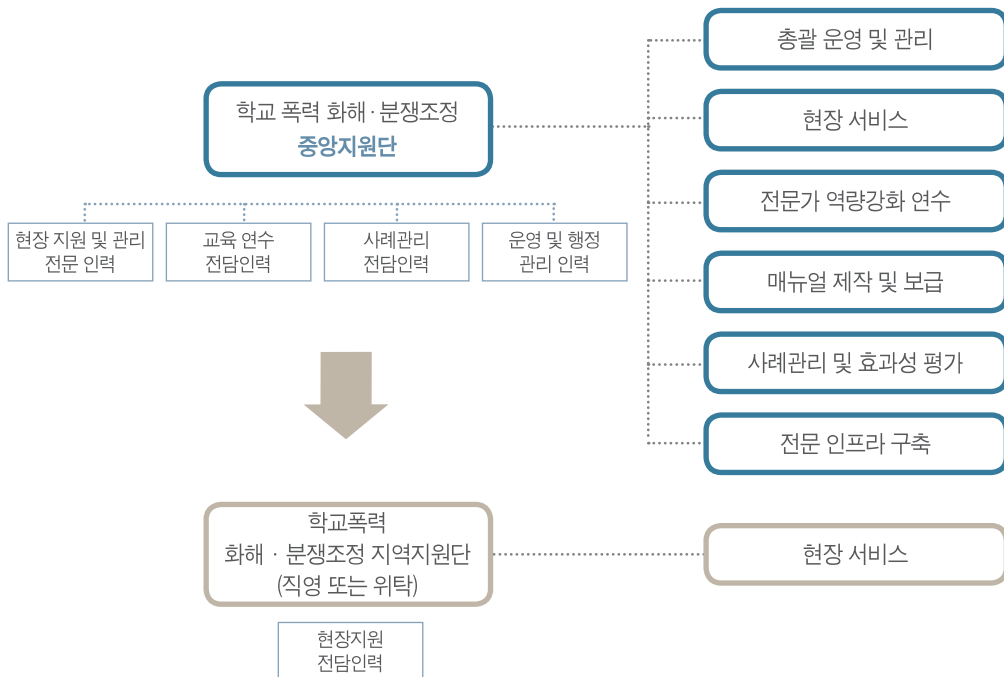
※ 그림설명 :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에 기본적인 뼈대를 제시한 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한 것임.

-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지원단과 시·도교육청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한다.”
- “중앙단위와 시·도교육청 단위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앙단위 지원단은 언론보도 및 중대한 사안,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야기된 사안을 다루고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화해조정 위주로 다루는 운영되어야 한다.”
- “화해·분쟁조정 지역지원단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 “지방에서는 화해·분쟁 지역지원단을 충분히 구성할 인력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 “시·도교육청은 업무운영 및 관리가 아닌 지원, 협력하는 곳이 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2) 2안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중앙지원단·지역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직영 운영체계

- 주요 의견으로는 시·도교육청 업무 및 부담 감소, 전문가 양성 및 매뉴얼 보급·관리가 용이성, 일원화된 사례 개입 시스템 구축 및 공정성 확보 등을 들어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지역별 자생력 상실,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감소, 개입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피드백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음.
- 또한 2안 모델 운영시 중앙지원단에는 전국 현장 지원 및 관리 총괄, 교육 연수 지원, 사례 관리 및 효과성 연구 등 전문성 관리, 전국 운영 및 행정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하고, 17개 시·도 지역 지원단에 지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최소 2인 1조의 현장 지원 인력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역지원단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음.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중앙지원단이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지원단을 직접 선발하여 직영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



[그림 3] 2안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중앙지원단·지역 화해·분쟁조정지원단 직영 운영체계

※ 그림설명 :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에 기본적인 뼈대를 제시한 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한 것임.

“화해·분쟁조정 지역지원단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중앙지원단이 지역 지원단을 직접 선발하여 직접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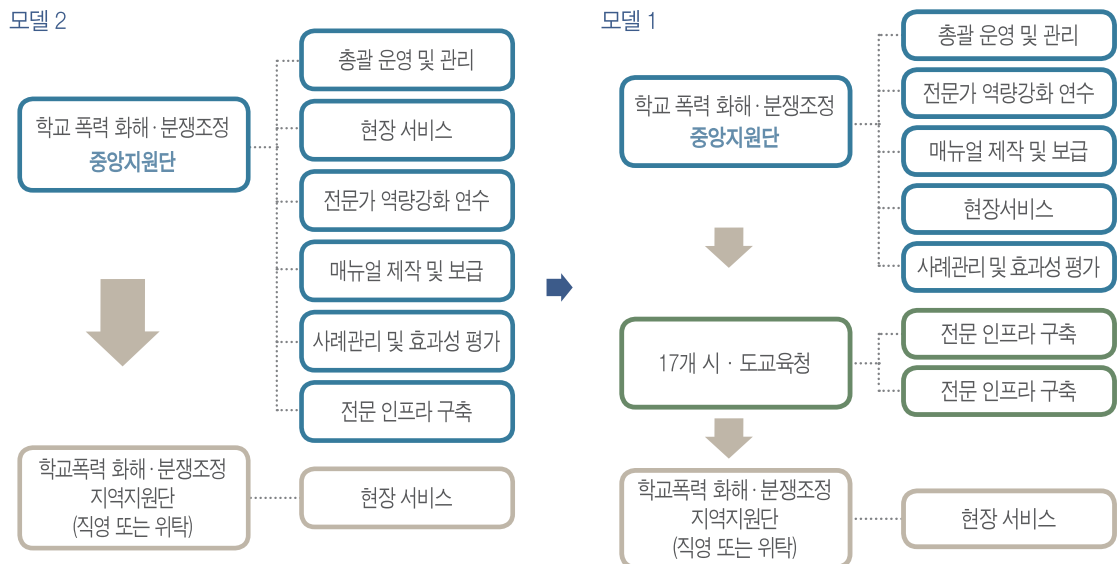
“시·도교육청의 업무부담은 줄어드나, 이 사업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피드백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성하여 이루어지기보다 중앙에서 일괄 운영 바람직하다. 시·도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 지원단을 직접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3안 : 先 중앙지원단 직영(2안) 시범운영, 後 지역 위탁(1안) 운영 체계 전환

- 위 2가지 도입 방안 외에 제시된 의견으로는 사업 초기에는 2안 모델을 적용하여 중앙지원단이 지역지원단을 직영으로 시범 운영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매뉴얼 구축, 사례 관리 등의 사업의 현장 안정화가 되는 시점에 각 시도별 위탁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임.

사업 실시 초기에는 2안 모델을 적용하여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중앙지원단이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지원단을 직접 선발하여 직영 운영 및 관리 시범 모델 운영하여 안정적 현장 기반을 갖춘 후 1안 모델인 지역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시스템



[그림 4] 3안 : 先 중앙지원단 직영(2안) 시범운영, 後 지역 위탁(1안) 운영 체계 전환

※ 그림설명 :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에는 1안과 2안만 제시되고 3안은 없었으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3안으로 새롭게 작성한 것임.

“모델2가 초기단계에서 적합하다. 하지만 지역위원단의 역량이 강화되면 모델1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단계적 운영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정착 전까지 직영 운영 방식, 정착 후에는 위탁 운영 방식이 되어야 한다.”

“중앙지원단은 시스템 관리, 언론 홍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필요시 지역지원단을 지원하는 형태로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직접 선발이 가능한 시·도에서는 직접 선발하여 구성하고, 직접 선발이 어려운 시·도에서는 중앙지원단의 추천에 의해 구성하는 방식을 혼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

- 전국 단위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안정화가 필요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유기적인 현장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 조정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모아졌음. 전문성 관리를 위해서는 조정 기술, 상담기술, 사안처리 전문성, 법률 지식 등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출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지원이 중요하며, 또한 전국 단위로 지원 가능한 전문가와 각 시·도별 지역 내 전문 인력의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분쟁조정(손해배상 관련)은 상담전문기관이나 화해지원단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른 전문성 필요).”

“시민단체에서 분쟁조정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을 위촉하여 연수를 실시한 후, 교육감위촉장과 명함을 제공하여 위원들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심어주고 관련인에게는 신뢰를 갖도록 하여 분쟁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예단처럼 전국단위의 지원팀과 각 시도별로 지역 내 분쟁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양성단계에서 전국단위 지원팀의 사례를 공유하여 지역 내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인적 구성이 중요하므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성하여 이루어지기보다 중앙에서 일괄 운영 바람직하다. (사안에 동일한 기준으로 개입되어야 한다.)”

▶ 학교·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 연수 지원

-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분쟁 발생 시 교사의 전문성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분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하지만 다양한 대상자의 복합적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확대되는 현장의 특성상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성공경험이 풍부한 교사는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 학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연수를 지원하여 현장에서 갈등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화해·분쟁조정 프로그램, 진행절차 및 단계별 유의사항, 성공·실패 사례 등을 제시한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의 초기 대응력 및 조정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관리자(학교장, 교감) 대상,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연수 과정 개설이 되어 화해·분쟁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면 좋겠다.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과정 개설을 처음부터 하기 어렵다면 핵심 전문가를 키워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및 협업 시스템 구축

- 주요 의견으로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발생 시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으로 숙련된 외부 전문가의 신속한 개입으로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 학교현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또한 이러한 분쟁조정은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검증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개입했을 때 실효성 있는 도움이 가능하며, 비전문가 및 기관의 조정 시도는 오히려 고통 받는 학교 현장 및 대상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분쟁조정 위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 위탁기관의 검증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음.

“화해·분쟁조정 역량이 있는 외부기관(시설)과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시도별로 관계회복, 갈등해결, 화해조정, 분쟁조정 역량을 갖추고 동시에 공정성 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갈등해결, 관계회복, 분쟁조정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역량있는 인력과 기관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원이 담당할 것인지 전문기관을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단계별 화해·분쟁조정 적용 확대

- 주요 의견으로 현재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교폭력 법률과 사안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안처리가 진행되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안처리 단계별 접근 및 다양한 소통 및 갈등·분쟁조정 창구가 마련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주체간의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현행 법령은 학생들의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이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이나 분쟁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다. 사안에 따라 갈등조정, 관계회복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도 교육의 일환이다.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공감을 길러주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도 기를 수 있다.”

▶ 사후관리를 통한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

- 학교폭력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교사)등 관련 대상자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건임. 따라서 전문가 의견으로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종결 이후 대상자별 문제의 회복정도 및 관계계선의 지속성,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음.

▶ 예산확보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각 전문가들은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화해·분쟁조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도록 근거가 신설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은 교육부에서 국고나 특별교부금으로 책정하여 기본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각 시·도별 교육청과 지자체 등에서는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비용을 추가 책정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와 지침 마련 등 정책적 방향 및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 특교금과 지역교육청 단위 예산 확보로 함께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 투입 필요하다. 단시간 내 투입 대비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을 이원화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법률 개정

-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임. 학교현장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에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모호한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장기적·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이 원활하게 연계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후 이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그래야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이 활성화될 것임.

1) 현행 법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05.15a)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개정 의견

- 주요 의견으로 조정의 주체가 자치위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에 부여하여 현장 운영 확대 근거 마련 필요, 조정 범위 확대 및 재정립 필요, 외부 기관 위탁 근거 조항 신설, 현 1개월 조정기간의 연장 등의 실질적 현장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의 여러 단계에 관계회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장과 전담기구에서 가·피해자간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중략)”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 분쟁당사자에 대한 상담,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고, 진행, 분쟁조정 결과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화해·분쟁의 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는 교육감 또는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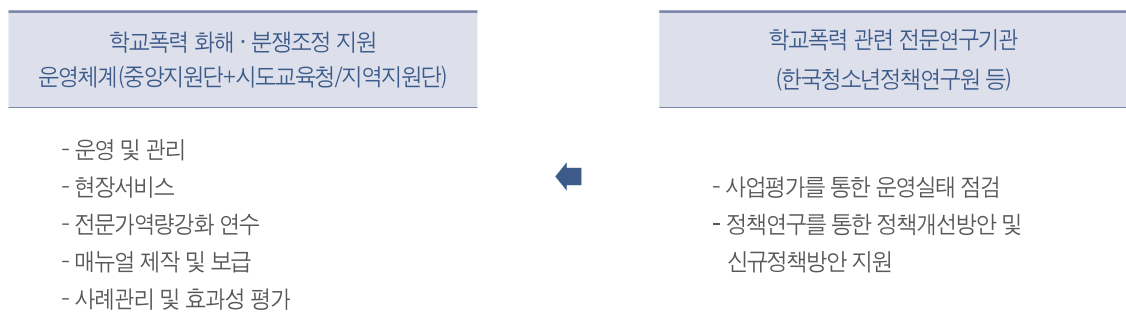
V.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전국단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안으로 1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해 · 분쟁조정 전문가의 양성 및 교사역량 강화, 외부전문기관 위탁 및 협업체계의 제도화, 학교폭력단계별 화해 · 분쟁조정의 적용 확대, 사후관리 지원체계의 구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법률의 개정 및 신설, 평가 및 정책연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하였음.

- ▶ 여기에서는 앞의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에 나타난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효율적 화해 ·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았음.
- ▶ 전국단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의 구축 : 앞의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분석에서 살펴 본 1안과 2안의 구축방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그 중 1안인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중앙지원단-17개 시도교육청-지역 화해 · 분쟁조정지원단 위탁 운영 체계가 2안인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중앙지원단-지역 화해 · 분쟁조정지원단 직영 운영체계에 비해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에 더 낫다는 점에서 1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초기 사업안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3안인 先 중앙지원단 직영(2안) 시범운영, 後 지역 위탁(1안) 운영 체계 전환의 형태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 화해 · 분쟁조정 전문가의 양성 및 교사 역량 강화 : 앞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양성이 중요함. 화해 · 분쟁조정 전문가의 양성은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정에 필요한 전문성인 조정, 상담, 사안처리, 법률 지식 등의 전문성을 교육할 수 있는 중앙단위의 교육연수체계 구축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전문가의 운영은 전국 단위로 지원가능한 전문가와 지역 단위로 지원가능한 전문가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아울러 학교장,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여러 가이드라인이 담긴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및 협업 체계의 제도화 : 앞의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및 협업 체계의 구축도 필요함. 학교에서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발생 시 전문적인 외부 전문기관에 신속히 위탁해 전문적인 외부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외부 전문기관과의 위탁 및 협업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학교폭력 단계별 화해 · 분쟁조정 적용의 확대 : 앞의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단계별 화해 · 분쟁조정 적용의 확대도 필요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단계별로 다양한 소통을 통한 화해 · 분쟁조정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사후관리 지원체계의 구축 : 앞의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후관리 지원도 중요함.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사안 처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가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예산의 안정적 확보 : 앞의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 위해서는 안정적 예산확보도 중요함.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임. 중앙에서는 교육부 국고 및 특별교부금으로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는 필요시 사안별로 추가 예산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좋을 것임.
- ▶ 법률의 개정 및 신설 : 앞의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도 필요함. 학교폭력 분쟁 조정의 주체가 현행 법률처럼 자치위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도 부여하여 현장 조정 운영 확대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1개월로 되어 있는 분쟁의 조정기간도 현실에 맞게 연장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외부 기관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 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의 지원 : 앞의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분석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효율적 화해 · 분쟁조정 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평가 및 관련 정책연구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첫째,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지원 운영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업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둘째,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운영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여러 환경의 변화에 맞는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사업의 정책적 개선방안 및 신규 정책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림 5]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 운영체계에 대한 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의 지원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3차(2015년~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17).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2017년 12월).
- 교육부 (201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교육부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년 수시과제 제안서.
- 교육부,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매뉴얼.
- 도종진 (2012).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35, 52-90.
- 류병만 (2013). 학교폭력 예방책으로서 '또래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23, 61-84.
- 문영희 (200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4), 1905-1932.
- 박주현, 정제영, 이주연 (2013).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5(1), 129-150.
- 배원섭, 성희자 (2014).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5(4), 269-28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8.05.15a).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081&efYd=20171128#0000> 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8.05.15.b).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527&efYd=20170726#0000> 에서 2018년 5월 15일 인출.
- 염영미 (2011). 학교폭력가해청소년과 학교폭력가해피해청소년의 특성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8(3), 117-136.
- 이경상, 장원경 (201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20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이상희 (201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4).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심포지엄-학교폭력 갈등·분쟁 해결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6). 학교폭력 화해조정, 분쟁조정, 갈등조정코칭 효과성 연구보고서(2015).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7a).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6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사업 효과성 연구보고서.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7b). 2017 푸른나무 청예단 청소년폭력 심포지엄-"청소년폭력,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가?"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7c). 2016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8a).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7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사업 효과성 연구보고서.
- (재)푸른나무 청예단 (2018b). 2017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
- 한영선 (2012).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에 의한 피해학생 선택에 관한 연구 -심층인터뷰에 의한 질적 연구-. 한국범죄학, 6(1), 131-164.

연구의 방향 설정과 실질적 현장 의견으로 도움 주신 (재)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센터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